

# ⊙ 行政·租稅등 專擔部 設置 根拠

○ 現行: §103②

○ 民正黨: §101②

○ 民主黨: 削除

現行과 같은

② 大法院에 行政·租稅·勞動·  
軍事등을 專擔하는 部를 들수  
있다.

- 오늘날 行政이 專門化 되고 訴訟事件이 폭주됨에 따라 國民의 權益을 가장 妥當性 있게 保障하기 위하여 行政裁判所, 財政裁判所, 勞動裁判所 등 法院의 組織도 專門化·組合化되는 傾向을 보이고 있음
- 우리나라는 最高法院인 大法院이 모든 訴訟事件이 集中되도록 하고 別途의 特別裁判所는 設치하지 않고 있으나 위와 같은 趣미를 反映하기 위하여 大法院內의 각각 專門化 된 部를 設치할수 있는 根拠를 든 것으로써 專이 削除할 필요 없음.